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10
----------	-----

제출년월일 : 2001. 12. 5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수수료등의 납부방법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조달청의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의 공용 사용에 따른 전자입찰제 시행등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의 수수료 징수방법에 관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수수료현실화 추진 계획에 따라 '98경기도 원가분석액대비 원가보상을 80% 미만인 종목에 대하여 수수료 요율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함

나. [별표1]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원가보상을 80%미만인 수수료 종목에 대하여 요율을 재조정하려는 것임(3종목)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제2호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중 요율을 가란제1호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은 1건당 6,000원을 8,000원으로 하고, 동란제2호 공유재산의 계속대부신청은 1건당 6,000원을 8,000원으로 하며, 다란제11호 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는 1건당 3,200원을 4,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세 무 과 ☎ 940-4298
입 안 자	세 무 과 장	석 명 범
	세외수입담당	사 미 영
	담 당 자	권 상 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징수방법) <생략> ② <신설>				제5조(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u>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u>			
[별표 1] 재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별표 1] 재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단위 : 원)				(단위 : 원)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가. 일반행정 관계				가. 일반행정 관계			
(1) <u>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u>	1건	6,000		(1) <u>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u>	1건	8,000	
(2) <u>공유재산의 계속 대부신청</u>	1건	6,000		(2) <u>공유재산의 계속 대부신청</u>	1건	8,000	
(3) <생략>				(3) <현행과 같음>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라. 건설 관계				라. 건설 관계			
(1)~(10) <생략>				(1)~(10) <현행과 같음>			
(11) <u>채비지 명의변경 신청서</u>	1건	3,200		(11) <u>채비지 명의변경 신청서</u>	1건	4,000	
(12)~(15) <생략>				(12)~(15) <현행과 같음>			

2001년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요율조정 종목 현황

㉠ 연 번	㉡수수료명	㉢ 현요율 (원)	㉣ 2001년 처리 예정 건수	㉤ 원가분석 액('98년 경기도 평균)	㉥ 현요율 보상율 (%) <㉢/㉤>	㉦ 추가보상 대상액 <㉤-㉢>	㉧ 조정 후 요율	㉨증액 요율 <㉧-㉢>	㉩ 조정요 율 보상율 <㉧/㉤>	경기도내 조정전 최고최저 요율	조정시군 최고최저 요율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신규)	6,000	3	7,907	75.9%	1,907	8,000	2,000	101.2%	500- 7,000	1,000- 8,000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신청	6,000	104	7,907	75.9%	1,907	8,000	2,000	101.2%	0- 8,000	600- 8,000
3	채비지 명의 변경신청	3,200	0	4,405	72.6%	1,205	4,000	800	90.8%	500- 4,000	2,200- 4,000

《관련법규 발췌》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

제38조(수수료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수수료·과태료·과징금·범칙금·벌금·과료 등을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그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수수료등의 납부방법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조달청의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의 공용 사용에 따른 전자입찰제 시행등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의 수수료 징수방법에 관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 수수료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98경기도 원가분석액대비 원가보상율 80%미만인 종목에 대하여 수수료 요율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으로 징수 가능토록 관련 규정 신설.
- [별표1] 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원가보상율 80%미만인 수수료 종목에 대하여 요율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3종목)

□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의거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으로 징수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과, 수수료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원가보상율 80%미만인 수수료 종목에 대하여 요율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 및 내용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8조 (수수료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수수료·과태료·과징금·범칙금·벌금·과료등을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그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